

운영 규정의 개요

○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본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을 따릅니다.

가. 본 계약에 대해서 양자 간의 이의가 없을 때는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합니다.
(단, 양자 간에 이의가 있을 때 계약만료 전에 계약 변경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2. 보호자는 입소 관련 계약사항을 성실히 지키며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

가. 입소(이용)자는 지켜야 할 제반 규칙을 충실히 준수합니다.

나.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시 통보를 해주어야 하며, 장기출장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 시설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파손 및 비품 등을 훼손했을 때는 보호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합니다.

3. 입소(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퇴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나. 회복이 어려운 위독한 병(전염병 등)이 있는 경우

다. 입소비용(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계속 연체할 경우

라. 기타 운영자가 요양원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퇴소를 명하는 경우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어르신들을 위한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건강상태 악화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본 기관은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며 다용도로 사용 등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입소어르신의 병원 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중환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환일 경우는 입소인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시설의 지정병원 또는 보호자의 선택에 의거 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합니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합니다.

3.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합니다.

○ 기타정보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요양 급여제공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 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